

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14.  
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가재울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완료를 앞두고 남가좌제1동 청사가 2015. 10. 5.에 이전함에 따라 주민센터의 위치를 변경하고, 정비구역 전체를 남가좌제1동 행정구역에 편입시켜 남가좌제1동과 남가좌제2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남가좌제1동 주민센터의 위치 변경 (안 별표 2)

나. 남가좌제1동, 남가좌제2동의 관할구역 변경 (안 별표 2)

동명칭	주민센터의 위치	관할구역
남가좌제1동	모래내로 15길 37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 15길 서측 및 가재울로 45 남측 지역
남가좌제2동	증가로10길 28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 15길 동측 지역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

2) 「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」 제9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
3) 입법예고(2015. 9.23. ~ 2015.10.13.)결과 관할구역의 방향기준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반영함

4) 규제심사 : 규제신설·폐지 등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6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등의 명칭·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 중 남가좌제1동의 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남가좌제2동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동명칭	주민센터의 위치	관할구역
남가좌제1동	모래내로15길 37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15길 서측 및 가재울로 45 남측 지역
남가좌제2동	증가로10길 28	남가좌동 중 모래내로15길 동측 지역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</p> <p>동의 명칭·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동명칭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주민센터의 위치</th> <th style="width: 65%;">관할구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현동 ~ 홍은제2동(생 략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남가좌 제1동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수색로2길</u> 4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남가좌동 중 <u>금모래길 서측 지역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남가좌 제2동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증가로10길 2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남가좌동 중 <u>금모래길 동측 지역</u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북가좌제1동~북가좌제2동(생 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동명칭	주민센터의 위치	관할구역	충현동 ~ 홍은제2동(생 략)			남가좌 제1동	<u>수색로2길</u> 48	남가좌동 중 <u>금모래길 서측 지역</u>	남가좌 제2동	증가로10길 28	남가좌동 중 <u>금모래길 동측 지역</u>	북가좌제1동~북가좌제2동(생 략)			<p>[별표 2]</p> <p>동의 명칭·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동명칭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주민센터의 위치</th> <th style="width: 65%;">관할구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현동 ~ 홍은제2동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남가좌 제1동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모래내로15길</u> 37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남가좌동 중 <u>모래내로15길 서측 및 가재울로 45 남측 지역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남가좌 제2동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증가로10길 2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남가좌동 중 <u>모래내로15길 동측 지역</u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북가좌제1동~북가좌제2동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동명칭	주민센터의 위치	관할구역	충현동 ~ 홍은제2동(현행과 같음)			남가좌 제1동	<u>모래내로15길</u> 37	남가좌동 중 <u>모래내로15길 서측 및 가재울로 45 남측 지역</u>	남가좌 제2동	증가로10길 28	남가좌동 중 <u>모래내로15길 동측 지역</u>	북가좌제1동~북가좌제2동(현행과 같음)		
동명칭	주민센터의 위치	관할구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현동 ~ 홍은제2동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남가좌 제1동	<u>수색로2길</u> 48	남가좌동 중 <u>금모래길 서측 지역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남가좌 제2동	증가로10길 28	남가좌동 중 <u>금모래길 동측 지역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북가좌제1동~북가좌제2동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동명칭	주민센터의 위치	관할구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현동 ~ 홍은제2동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남가좌 제1동	<u>모래내로15길</u> 37	남가좌동 중 <u>모래내로15길 서측 및 가재울로 45 남측 지역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남가좌 제2동	증가로10길 28	남가좌동 중 <u>모래내로15길 동측 지역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북가좌제1동~북가좌제2동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  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 : 동 경계를 변경하는 조례로 비용발생 하지 않음.

4. 작성자 : 행정지원과 행정7급 유미현(330-1054)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 [시행 2015.6.4.]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, 타법개정]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### □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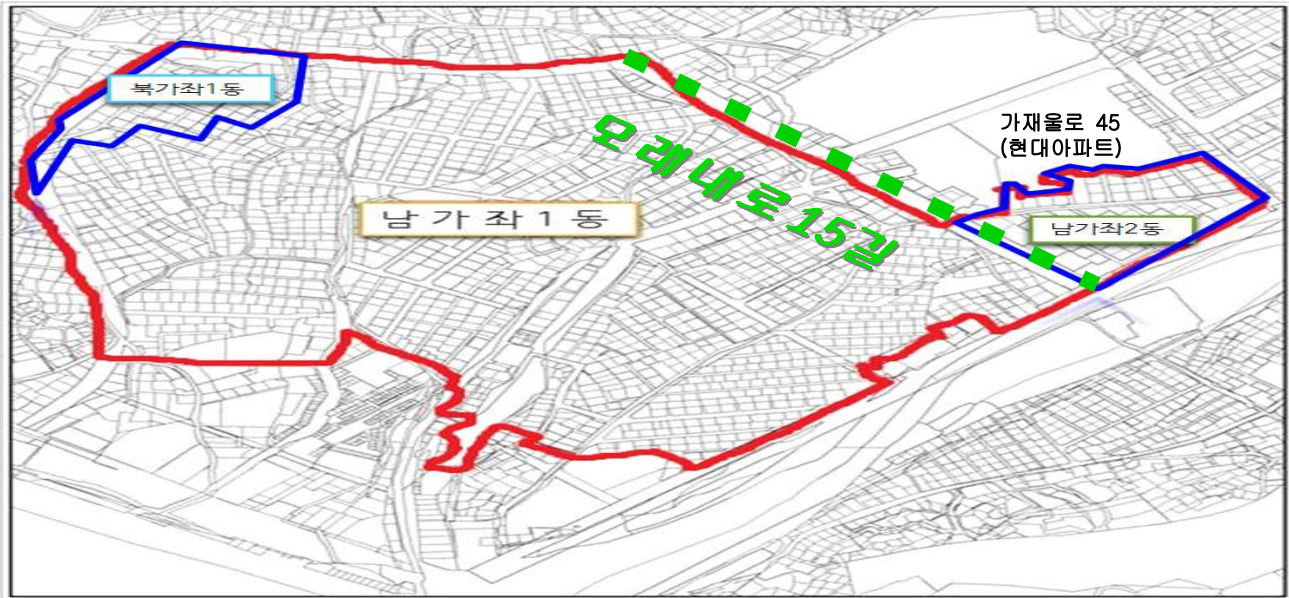
[시행 2014.11.19.] [행정자치부령 제1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
제9조의2(토지의 개발·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)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·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·면·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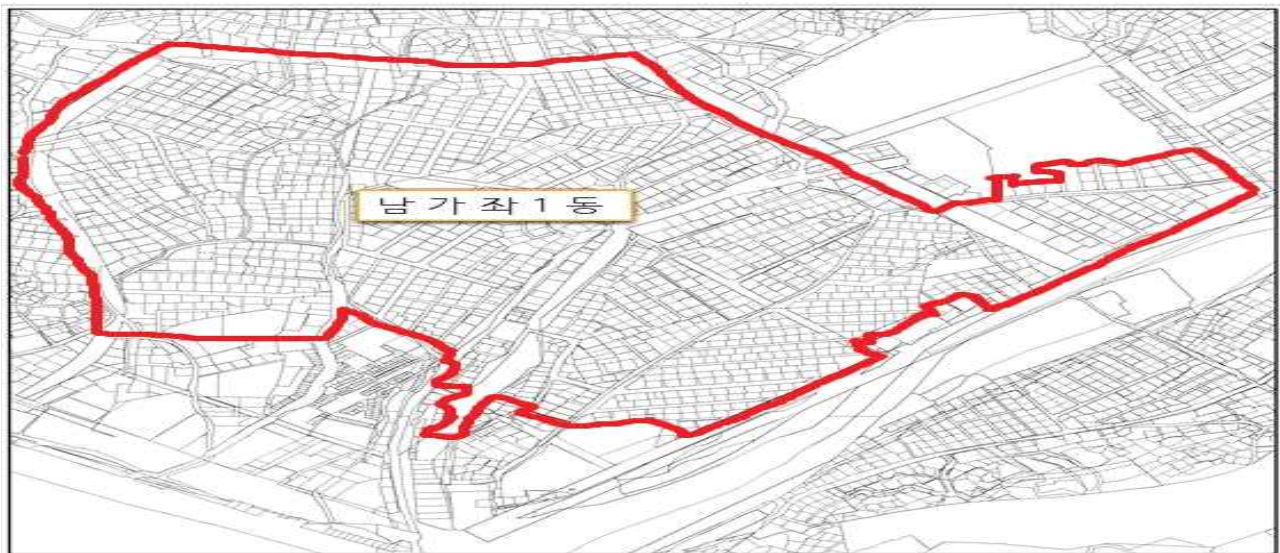
1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
2.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
3. 행정구역 변경도

## ▣ 행정구역 변경대상 현황도

변경전



변경후



— : 동 경계

— : 사업구간